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27

발의연월일 : 2025. 12. 26.

발 의 자 : 윤후덕・이병진・김주영
김정호・이재강・강선우
김태선・박수현・박지원
최혁진・임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신국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비하, 모욕 등 혐오표현이 빈발하면서 외국인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2025년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이주민, 망명 신청자・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 하기도 함.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해 공동체 간 신뢰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러한 혐오표현이 금지됨

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함(안 제2조).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모욕·위협하는 행위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게시·배포하는 행위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나.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

법률 제 호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혐오표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모욕·위협하는 행위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

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게시·배포하는 행위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제3조(혐오표현의 금지)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혐오표현을 방지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혐오표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혐오표현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혐오표현 규제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3. 혐오표현 방지와 대처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주요 시책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혐오표현의 구제 등

제8조(진정) ① 혐오표현을 당한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정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용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혐오표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혐오표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